

공적 인물에 의해서 제소되고 공익에 관한 문제가 연루된
두 사건의 판결이 상이한 판례

Curtis Publishing Co. v. Butts
Associated Press v. Walker
388 U.S.130 (1967)

뉴욕 타임즈 대 실리반 사건에서, 당 법정은 다음과 같이 지지했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장은, 만약 관공리가, 보도된 기사가 「현실적 악의 : 기사가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거나 또는 그것이 허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무분별한 무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공무행위와 관련된 명예훼손적 허위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연방적 법칙(federal rule)을 요구한다는 것을 지지했다. 우리들은 여기에서 관공리가 아니고, 「공적 인물 (public figures)」에 의해서 제소되고 또 공중이 정당하고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쟁점에 연루된 명예훼손 소송들에 관한 판결의 충돌을 이들 두 사건에서 고찰하게 되었다.

I

커티스 출판사 대 버츠(Curtis Publishing Co. v. Butts) 사건은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Saturday Evening Post)지가 1969년에 있었던 조지아 대학과 알라바마 대학간의 미식축구경기가 조작되었다는 기사로부터 발단되었다. 그 기사가 공표된 당시에, 버츠 씨는 조지아 대학의 경기 감독자였으며, 경기진행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다 조지아 대학은 주립대학이었으나, 버츠 씨는 주에 의해서라기보다 사설 법인인 조지아경기협회(Georgia Athletic Association)에 의해서 고용되었다. 그는 전에 조지아 대학의 미식축구의 헤드코치로 있었던 적이 있고, 코치사회에서 유명하고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는 코치라는 직업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기사가 공표되던 당시 직업팀과 코치자리를 교섭하고 있었다. 그 기사는 『대학 미식축구 조작의 내막』이란 제목을 달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머릿 기사를 실었다. 「시카고 화이트 삭스 팀이 1919년의 월드 시리즈에서 경기를 일부러 저준 이래로 이 사건만큼 충격적인 스포츠 이야기거리가 없다. 조지아 대학이 알라바마 대학과 경기를 하기 전에, 그는 그의 코치와 선수들에게 수비형태의 경기를 하라고 지시했고, 조지아 미식 축구팀의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본문기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아틀란트 보험회사의 직원인 조지 버네트 씨는 전화가 혼선되었기 때문에, 경기를 일주일정도 남겨놓고서 버츠 씨와 알라바마 대학의 헤드 코치인 폴·버안트 씨간의 전화통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그는 버츠 씨가 조지아 팀의 공격각본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조지아 팀이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를 말했으며, 선수들과 경기각본에 대해 하나하나 언급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다. 독자들은 버네트 씨가 대화내용을

기록했고, 그리고 폭로된 비밀에 관한 특별한 사례들이 설명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사는 또 그 경기에 대한 경기내용과 선수들의 행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했다.

「조지아의 선수들과 그들의 행동이 미리 분석되었고, 마침내 그들은 당황한 쥐들처럼 보였으며, 그래서 패배했다」

그리고 선수들과 사이드라인·업저버들은 알라아마 팀이 조지아 팀의 비밀을 통고받은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 사실은 버네트 씨가 후에 조지아 팀의 헤드 코치인 조니 그리피스 씨에게 그의 기록서를 제시하면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버츠 씨가 건강과 사업상의 이유로 그 대학의 경기업무로부터 손을 떼게 되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그 기사의 결론은 그것의 기대되는 충격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했다.

「그 전망은 월리 버츠 씨가 어떤 미식 축구팀에게도 다시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대학 당국과 사우스 이스턴 협회의 직원들에 의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또 다른 경기들에 대한 기록영화도 세밀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그것이 언제 끝날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의 경력이 파멸될 것이 확실하다. 」

버츠 씨는 500 만 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금과 500 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면서 조지아 연방법원에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했다. 고발이 신청되었고, 그리고 당 법정이 뉴욕 타임즈 사 사건을 판결하기 전에, 심리가 완료되었다. 그리고 피고인 커티스 출판사에 의해서 제기되는 유일한 면책은 실제적인 진실이었다. 비록 커티스 출판사 측 변호사들이 뉴욕·타임즈 사 사건의 진행과정을 알고 있었고, 또한 일반적인 헌법적 면책이, 주의 고용인인 알라바마 대학의 코치에 의해서 제소된 명예훼손소송에서, 커티스 출판사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헌법적 면책도 개입될 수 없다. 심리에서의 증거는 그 기사의 진실에 대한 것과 그 기사의 상태에 대한 두 가지로 집중되었다. 그 증거는 버네트 씨가 버츠 씨와 알라바마 팀 코치간의 대화를 실제로 엿들었음을 입증했다. 그러나, 그 대화의 내용이 강렬하게 논박되었다. 버츠 씨는 대화내용이 일반적인 미식축구에 대한 대화였고, 또 버네트 씨가 엿들은 것은 상대방 코치에게 어떤 특별한 평가를 한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문감정인은 버네트 성의 기록과 경기필름을 분석한 결과 버츠 씨의 입장을 지지했다. 그 경기와 선수들에 대해 언급한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지의 각색은 대단히 모순점이 많았다. 그 기사의 상태에 대한 증거는 기사를 근거로 한 적정성에 심한 의문을 던져주었다. 버츠 씨의 주장은, 그 잡지가 선의의 조사와 보도기준에서 크게 벗어났고, 그리고 그 기사의 강력한 단언에 비추어 볼 때, 결과적으로 부주의하고 조리에 맞지 않는 행위가 되어서 매우 비난받을 만하다는 것이다. 배심은 일반적 손해배상금 6 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금 300 만 달러를 지불하도록 판결했다. 심리법정은 총액 46 만 달러로 삭감했다. 그 직후에 우리들은 뉴욕 타임즈사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고, 커티스 출판사는 그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심리판사는 커티스 출판사의 청구를 두 가지 이유들 때문에 기각했다. 첫째로, 그는 버츠 씨가 관공리(public official)가 아니기 때문에, 뉴욕 타임즈에 대한 판결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 그는 피고가 그 기사의 진위에 대해 무분별하게 경시했다고 계심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커티스 출판사는 2.1 의 표결로 지방법원의 판결을 확정시킨 제 5 순회 법정인 항소법원에 항소했다.

II

미국 AP 통신사 대 월커(Associated Press v. Walker) 사건은 1962년 10월 30일 밤에 미시시피 대학의 캠퍼스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한 목격자의 기사를 배포함으로써 일어났다. 그 당시 미시시피 대학의 학생인 제임스 머리디스라는 흑인학생을 등록시키라는 법원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노력때문에, 큰 폭동이 일어났다. 그 발신기사는 캠퍼스에 있던 월커가 폭동군중을 지휘했고, 그리고 법원명령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명령을 보존하는데 조력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파견된 연방법원의 집행관들을 개인적으로 공격했다고 말했다. 그 기사는 역시 월커가 폭도들에게 폭력을 사용하도록 고무하고, 최루탄의 효력에 대항하는 기술적인 충고를 한 것으로 묘사했다. 월커는 폭동이 일어나고 기사가 공표된 그 당시에, 사적인 시민이었다. 그는 정치활동에 가담하기 위해서 사직한 미 육군에서 오랫동안 명예로운 임무를 수행했고, 그리고 실제로 1957년에 아칸사스의 리틀 록에서 인종에 따른 학교분리투쟁이 있는 동안에 연방군대를 지휘했다. 그는 연방정부의 물리적인 간섭에 대한 논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광범위하게 경험한 이러한 행동에 반대하는 강한 발언을 많이 했다. 월커는 「월커의 친구들(Friends of Walker)」이라는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그는, 공정하게 볼 때, 약간 정치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다. 월커는, 보상적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금 200만 달러를 요구하면서, 텍사스 주 법원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AP 통신사(Associated Press)는 진실에 의한 면책과 헌법적 면책 두 가지를 들어서 이의를 제기했다. 심리에서 양측은 미시시피 대학의 캠퍼스에서 일어났던 폭풍 같은 사건을 재현하려고 노력했다. 월커는 캠퍼스에 나타났던 사실을 시인했고, 그가 일단의 폭도들에게 연설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어쨌든, 그는 그들에게 절도있고 평화로운 항거를 권유했으나, 그의 간청을 거부한 군중들에게 어떤 통제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정적으로 연방법원의 집행관들에 대한 어떤 폭행에도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뉴스발신의 상태와 관련된 증거가 거의 없었다. 어쨌든, 이 기사를 작성한 반 사벨이 기사화된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 사건현장에 있었고, 그 기사를 즉각적으로 아틀란타에 있는 미국 AP 통신사에 보고한 것이 명백했다. 통신사에 한 구두보고와 후에 문자화된 기사와의 사이에 모순길이 나타났다. 그러나, 한 가지 관련성이 있는 것은 월커가 군중들이 연방법원 집행관들에게 접근하기 전 또는 후에 그들에게 연설했다는 것이다. 다른 어떤 증거도 부적당한 작성이 시도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사별 또는 미국 AP 통신사측에 개인적 편견 또는 부당성에 관한 증거가 없었다. 50만 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금과 3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유죄평결이 내려졌다. 어쨌든 심리판사는 현실적 악의가 있었다는 배심의 회답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징벌적 보상을 배척했다. 그 심리판사는 역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만약 뉴욕 타임즈의 판결원칙이 적용된다면, 이 「악의」의 결핍이 미국 AP 통신사에 대해 유죄평결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그 원칙의 적용을 거부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소송에 대해 부가적 방어를 요구하는 공공정책의 강제적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진실만이 적절한방어가 되어야 된다. 양측이 모두 항소했고, 텍사스 민사항소법원은 보상적 손해 배상자 징벌적 손해배상 모두를 확정했다.

III

그래서, 우리들은 커티스 출판사와 미국 AP 통신사에 의해서 제기된 헌법적 주장에 대해 생각했다. 강력한 논거들은 이 두 사건들에서 뉴욕·타임즈의 판결원칙의 확대에 집중되었다. 버츠 사건에서, 버츠가 주립대학의 경기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들이 로젠브라트 대 베르(Rosenblatt v. Baer) 사건의 사실들과 4 가지 점들에서 일치하는 것이 다투어진다. 경기협회(Athletic Association)가 그 주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되었고, 버츠가 기술적으로- 베르와 마찬가지로 -주고용원이 아니었고, 주정부에서 그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므로 로젠브라트의 기술적 저명성이 무시되어야만 한다. 비록 이 요인이 약간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교육에 있어서 그리고 특별히 교육기관의 경기업무에 관한 행위에 있어서의 공익은 공공관리(public official)에게 주어지는 보호(protection)와 동등하게 그것에 연루된 개인의 헌법적 보호를 정당화 시킨다고 생각한다. 유사한 주장이 미시시피의 폭동에 연루된 사건들과 개인들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중요한 공익이 있는 월커 사건에서 제기되었다. 이 사건에서, 명예훼손법의 보호에 대한 월커의 주장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논쟁의 「소용들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기 때문이다. 명예훼손법의 역사는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양육하는 것과 전적으로 다른 토양에서 유래되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 초기에 명예훼손은 근본적으로 말(words)에 의해서 치안방해(breach of the peace)를 야기시킬 만하게 주, 국교 그리고 개인을 악평하는 경향이 있는 어떤 글(writing)을 처벌하는 기능, 즉 형사적 구제책이었다. 진실은 명예훼손소송에서 면책되지 않았고, 진실의 증명은 민사소송에서 권리회복을 방해했을지도 모른다. 이 제한은 피고가 공표의 진실에 의해서 보호된다는 가정에 의해서 라기 보다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원고를 앎게 하는 재판상의 거리낌이 명백한 것(manifestation of judicial reluctance)으로 더 쉽게 설명된다. 동일하게 진실된 언사가 형사적 명예훼손소송의 기초가 될지도 모른다. 물론, 명예훼손법은 초기의 공화국시대 이래로 대체적으로 변해오고 있다. 그 변화의 중요한 핵심은 형사적 구제책으로부터 민사적 구제책으로, 절대적인 사회적 가치로부터 정당한 개인적 이익의 안전장치로 전환되었다. 진실은 여러 사건들에서 절대적 면책이 되고 있고,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조장하도록 의도된 특권(privileges)은 대체로 전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근원적인 사실의 진실은 중요한 사회적 가치가 있는 공표와 심각한 사회적 해가 없이 억제되어질 수 있는 공표들간의 한계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대립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한편, 우리들은 정당하고 중요한 공익을 지니고 있는 사물들과 개인들이 포함된 이전의 사건들에서, 허위의 발견만이 공표자로부터 보호를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해 오고 있다. 타임사 대 힐 사건에서, 우리들은 무엇이 「진실인가를 판단하는 배심에게 사전편견을 주는 것이 잠재의식에 영향력을 미칠지 모르고 그리고 자유로운 토론이 마려된 상황에서 오류의 불가피성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들에서, 우리들은 뉴욕 타임즈사 사건에 연루된 특수한 상황들 중에 어느것도 결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소송들은 치안방해적 명예훼손에 대한 박해로 유추적으로 설명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명예훼손의 책임에 반하는 그의 언사를 보호하는 특별한 특권이 주어져 있지 않다. 우리들은 타인에 의한 합법적인 행위를 가장한 부적합한 행동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에게 대한보상과 관련해서 우리들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책임의 법칙으로부터 안전한 지침을 모색하도록 요구된다. 이러한 법칙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특별히 어떤 상황아래서 기대되어지는 보호의 정도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들을 정식화하는데 있어서, 법정은 끊임없이 피고의 행위의 중요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명예훼손 소송에서, 법정은 역시 피고의 중요한 활동과 자기방어의 수단에 비추어서 법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원고의 지위를 심사하고 있다. 우리들은, 어떤 사실(materials)을 유포시키는데 연루된 공익과 그것들을 유도시키는데 있어서 발행인의 이익은 뉴욕 타임즈사 사건에 연루된 것들과 거의 마찬가지로라는 점을 지적한다. 버츠(Butts)와 월커(Walker) 사건들은 기사가 공표될 당시에 공익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우리들의 견해에서 이들 두 사람들은 불법행위법아래서 「공적인물」로 분류될 수도 있다(Spahn v. Julian Messner, Inc. 참조).

관공리인 사람이 연루된 명예훼손소송과 버츠와 월커 같은 정황에 놓여있는 사람이 연루된 명예훼손 소송사이의 유사성과 상이성은 우리들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책임의 원칙들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러한 종류의 명예훼손 소송들이 합법적 보호를 유린함으로써 무제한적인 주의 명예훼손법에 전적으로 일임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결론으로 유도한다. 그러나, 뉴욕 타임즈사 사건에 대한 엄격한 연방의 요구는 문제가 되어 상호 충돌적인 이익에 대한 유일하게 적절한 조정이 아니다. 우리들은 관공리가 아닌 「공적인물」이 평판을 명백하게 위협하는 실체를 가진 명예훼손적인 허위로 인한 손상을 역시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그리고 이것을 지지할 수 있다. 평판을 명백하게 위협하는 실체에 의한 명예훼손적 행위란 심사기준으로부터 과도하게 이탈해서 크게 부당한 행위를 보여주고, 그리고 원초적으로 책임있는 발행인에 의해서 부당한 행위가 신봉되어 보도된 것이다. 이 견해의 어느 것도 타임사 대 힐 사건에 대한 우리들의 최근 판결을 포함해서, 뉴욕 타임즈 사 사건에 대한 지지와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IV

우리들이 이들 사건에서 손해배상금의 합법성을 믿는데 따른 기준을 설정해야 하므로, 당 법정이 뉴욕·타임즈 사 사건에서 그랬듯이, 우리들은 그 증거와 판결이 기준에 합치되는지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우리들은 그 기준이 버츠 사건에서 만족되고, 그리고 월커 사건에서 증거 또는 판결의 어느 한 가지가 만족되지 않음을 발견한다. 그 증거는, 버츠에 관한 기사는 「핫 뉴스(hot news)」적인 감각이 없었고, 그 잡지의 편집인이 심각한 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 입증되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경계가 무시되

있다.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Saturday Evening Post)지는 버네트(Burnett)가 부도수표혐의와 관련해서 집행유예 중에 있었으나, 실체적으로 독립된 뒷받침없이 진술서에 근거한 기사를 공표하도록 했다는 것을 알았다. 버네트의 노트가 공표에 앞서 그 잡지사의 어느 직원에 의해서도 검열되지 않았다. 전화가 도청되었을 때 버네트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존 카미첼이 인터뷰되지 않았다. 만약 버네트의 정보가 정확했다면, 그 경기필름을 검토하기 위한 시도가 없었을 것이고, 그 정보가 폭로된 후에 알라아마 대학이 그 계획을 정당화했는지에 대한 것을 발견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없었을 것이다. 그 기사를 작성한 포스트 지의 기자는 미식축구 전문가가 아니었고, 스포츠에 지식이 깊은 사람에 의해서 그 기사를 검열하려는 어떤 시도가 없었다. 심리에서, 스포츠 전문가들은 버네트의 노트에 기록된 정보는 경기필름으로부터 상대편 코치에게 일상적으로 교환되거나 가치없는 것이 명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사과정에서 포스트 지의 기사를 두둔한 사람들은 이미 알라바마 대학의 코치가 커티스 출판사를 상대로 한 또다른 기사에 근거된 다른 명예훼손소송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지는 「궤변적인 추문폭로」 정책을 세움으로써 그 잡지의 이미지 변화를 열망하고 있었다. 그리고 성공적인 폭로를 창출해내기 위한 압박은 기준을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케 했다. 간략히 말해서, 증거는 조사의 기준을 크게 벗어나고, 원초적으로 책임있는 발행인에 의해서 지지되어 보도된 대단히 부당한 행위란 판단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월커 사건에서의 상황은 상당히 다르다. 심리법정은 원초적인 부주의 이상의 것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민사항소법원은 그 증거에 대한 심리법정의 견해를 지지했다. 버츠에 관한 기사와는 대조적으로, 월커 사건에서 우리들의 관심을 끄는 통신문은 즉각적인 유포가 요구되는 뉴스이다. 미국 AP 통신사는 사건현장에 있던 특파원으로부터 그 정보를 받았고, 신뢰할 수 있고 적절한 모든 지시를 했다. 사소한 예외를 제외하고서, 이 사건에 관한 그의 발신문은 본질적으로 일치했고, 전에 월커 장군에 관해 공표된 언사와 불일치 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 같다. 신속한 유포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일련의 사건에서 공표기준을 크게 벗어난 흔적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월커 장군이 미국 AP 통신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V

우리들은 기사로 인해서 손상을 입은 버츠에 대한 보상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커티스 출판사의 주장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사회의 「진보된 양심」에 의해서만 해당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산정에 종속될 수 없다. 커티스 출판사는 잡지발행인에 대한 무제한적인 징벌적 보상금이 배심에게 발행인의 사업을 파괴하는 힘을 부여함으로써 효과적인 사전억제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들은 이 논증을 수락할 수 없다. 커티스 출판사와 같은 발행인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불법행위소송이 유발될지도 모르는 폭 넓고 다양한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일반적으로 강제되는 부담으로부터 발행인을 면책시키는 것은 헌법적 보호에 의해서 요구되지 않는 보호를 확대시키는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들은, 언론 · 출판에 대한 헌법적 보장은 심리법정의

완화에 의해서 이 사건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과도한 배심의 평결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의해서,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확정된 경우조차도 배심의 편견에 의한 청결이 유지될 수 없다는 일반적 법칙에 의해서 적절히 제공된다고 생각한다. 출판의 책임에 대한 기준으로부터의 발행인의 이탈은 헌법적 보호로부터 그를 박탈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우리들은 정부가 피해를 입은 개인을 보호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폐습에 대항하는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는 모든 것들을 보호하는 것이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나아가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일반적 명예훼손 법 아래서 「나쁜 의지(ill Will)」의 발견이 필요하다. 그리고 발행인이 헌법적 보호를 위해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준조차도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원고의 울분을 터뜨리는 창구(venting of his spleen)」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은 온당치 않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보상적 손해배상금의 지불을 정당화 시키기에 충분한 비행은 역시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부과를 정당화 시키고, 이러한 보상이 배심의 단순한 편견에 근거되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지한다.

판결에 동의한 워렌(Warren) 판사의 견해

나는 이들 두 사건에서 할란(Harlan) 판사에 의해서 고지된 결과에 동의하는 한편, 나는 그러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가 언급한 이유들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들의 상이점은 우리들이 불과 3년 전에 함께 서명한 뉴욕 타임즈 대 설리반 사건의 교훈으로부터 출발한 그의 견해로부터 유래된다. 나에게 있어서는, 「공적 인물(public figures)」과 「관공리(Public officials)」간의 차이점 그리고 각각을 입증하기 위한 분리된 기준들의 채택은 법, 논리, 또는 수정헌법 제 1 조의 정책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점차적으로 이 나라에서, 정부와 개인의 영역간의 차이점이 흐려진다. 1930 년대의 공황과 세계 제 2 차 대전 이래로, 정치적·경제적 힘의 급속한 융합, 과학 · 산업 · 정부의 합병 또 학계 · 정부 · 재계간의 높은 상호작용이 진행되고 있다. 공황, 전쟁, 국제적 긴장, 국내외적 시장, 그리고 과학과 기술의 급진적 성장은 국내외적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국내외적 문제점들을 잉태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결과는 행정적 힘의 강화를 유발시키는 한편, 힘은 우리들이 사적 영역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있는 영역에서 역시 더 많이 조직화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록 그들이 정치적 작용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관공리」와 같은 「공적 인물」은 가끔 명령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역할을 행사한다. 그리고 「공적 인물」과 같은 계층은 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견해와 활동에 대한 비판을 반격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의 매스미디어에 접근하는 것이 「관공리」만큼 용이한 것이 명백하다. 우리 시민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행위에 합법적이고 실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공적 쟁점과 사건에 그들이 연루된 금지되지 않는 논쟁에 참여하기 위한 언론의 자유는 「관공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그러므로, 나는 「공적 인물」뿐만 아니라 「관공리」가 관련된 사건에서도 역시 뉴욕 타임즈의 기준을 지지한다. 그것은 쉽게 진술되고 이해되며, 다루기 쉬운 기준이다. 그것은 또한 명예훼손법에 의해서 전통적으로 보호되는 합법적 이익을 적절한 정도로 균형을 유지시킨다.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에 대한 정의는 허위이고 명예훼손적인 것을 공표한 발행인측에 「고의적인 허위

(knowing falsehood)」가 있는 경우에 권리회복이 제한되는 그렇게 제한적인 것이 아니다. 진실 또는 허위에 대한 「무분별한 무시(reckless disregard)」는 공표자의 행위에 의해서 측정되는 것으로서, 명예를 손상시킨 허위사실을 공표한 책임을 역시 그에게 물을 것이다. 어쨌든 보다 중요하게, 뉴욕 타임즈의 기준은 언론과 공중이 합법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전달받는 권리를 위한 중요한 안전 장치이다. 그들이 「관공리」 또는 「공적 인물」이든 간에 「공적인 사람들(public men)」에 연루된 사건에 적용되더라도, 그것은 수정헌법 제 1 조가 보호하기 위해서 계획된 근본적인 취지를 위해서 필요한 격리를 제공할 것이다.

더글라스 (Douglas) 판사가 합세하고 찬성한 블랙(Black) 판사의 견해

나는 할란 판사의 견해에 따른 근거와 이유에 기초 된 미국 AP 통신사 대 월커 사건에 대한 판결을 파기하는데 동의한바 어쨌든 나는 뉴욕·타임즈 대 설리반 사건의 판결에서 표현된 우세한 헌법적 원칙에 기초된 중요한 이 사건에서 당 법정이 이번에도 한가지 견해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타임 대 힐 사건에서처럼 이 사건이 파기되기를 바란다. 그 견해에 동의하면서, 나는 전부터 대단히 광범위한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표명해 온 나의 견해의 어떤 부분도 철회하지 않는다. 나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수정헌법 제 1 조와 제 14 조에 의해서 이 나라 국민들에게 부여되도록 계획되었다고 생각한다.

더글라스(Douglas) 판사와 일치하는 블랙(Black) 판사의 반대견해

나는 뉴욕 타임즈 대 설리반 사건에서의 나의 찬성견해 그리고 로젠브라트 대 베르 사건에서의 나의 찬성과 반대견해에 주어진 이유들에 의해서 이 사건(커티스 출판사 사건)이 파기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나는 몇 마디에 더 첨언하고자 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사건은 명예훼손과 관련된 뉴욕 타임즈의 헌법적 원칙이 명예훼손재판에 의해서 파괴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언론을 보호하는 것이 전적으로 부적당하다는 나의 예측의 정착성을 설명하고 있다. 당 법정은 미국 AP 통신사 대 월커(Associated press v. Walker) 사건을 파기했으나, 커티스 출판사 대 버츠(Curtis Publishing Co. v. Butts) 사건을 확정했다. 내가 결정하는 한에 있어서, 아주 대조적인 이 판결의 중요한 이유는 마치 배심이 그랬던 것처럼 당 법정은 이들 두 사건의 사실을 고찰했고 그리고 버츠에 관한 기사를 공표한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 지는 너무 모욕적이어서 그 기사가 미국 AP 통신사의 기사보다 헌법적 수준에서 더 명예훼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것은 명예훼손 사건들을 위한 헌법적 기준을 세우기 위한 생소한 방법이라고 여겨진다. 만약 이 선례를 따르게 된다면, 우리들은 앞으로 명예훼손소송에서 그 사실을 중시해야 하고 그리고 모든 신문들과 잡지들이 상스러운 것을 작성하거나 보도하는 유죄가 헌법적으로 명예훼손이라고 지지해야만 한다. 한편, 보도된 것의 질이 우리들 다수에 의해서 증명되면, 그것들은 명예훼손이 아니다. 마지막 고찰로서, 이러한 상황아래서 우리들이 할 일은 배심원들에 의해서 결정된 사건에서 사실적 질문을 검토하는 것이다. 검토는 수정헌법 제 7 조의 전면적인 위배이다. 당 법정이 외실분야에서 현재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예훼손분야에서 동일한 곤경으로

빠져들고 있는 사실이 나에게 충격을 준다. 당 법정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이 법정의 법척아해서 무엇이 헌법적으로 외설 또는 명예훼손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알 수 없다. 나는 이 법정이 뉴욕 타임즈 대 설리반 사건의 판결원칙을 포기할 시기이고 그리고 수정헌법 제 1 조가 명예훼손판결의 괴로움으로부터 언론을 자유로운 상태로 두려고 의도한 효과를 지닌 법척을 채택할 시기라고 생각한다.